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 정	1988. 3. 9	규칙	제 16호
전문개정	1991. 5.16	규칙	제 76호
전문개정	1994. 6.30	규칙	제141호
개 정	1994.10.17	규칙	제149호
전문개정	1995.12.21	규칙	제173호
개 정	1998. 1.17	규칙	제218호
개 정	1999.12. 1	규칙	제279호
개 정	2000.12.29	규칙	제298호
개 정	2001.12.24	규칙	제325호
개 정	2003. 4.23	규칙	제351호
개 정	2004. 9.20	규칙	제383호
개 정	2005. 3.25	규칙	제402호
개 정	2006. 2.21	규칙	제420호
개 정	2007. 2.23	규칙	제443호
개 정	2008. 3. 3	규칙	제475호
개 정	2009. 1.30	규칙	제510호
개 정	2010. 5. 7	규칙	제56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부터 제124조의2까지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심사 및 확인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30)

제2조(적용범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접수·심사 및 확인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1.3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영·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1.30)

제 2 장 심사반의 구성 등

제4조(심사실시기관) 계획서의 심사는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른 대상공사를 1종 및 2종으로 구분하여 1종 공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본부, 2종 공사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센터(이하 “일선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1종 및 2종 공사구분은 별표 1 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0. 5. 7)

②<삭제 2010. 5.7>

제5조(심사반의 구성) ①공단 이사장 또는 지역본부장·지도원장·센터소장(이하 “일

선기관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하려면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대상공사는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1명을 책임심사위원으로 지정하고 1명은 공단 전문 직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②이사장 또는 일선기관장은 계획서의 내용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외부 심사위원을 심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1. 신공법 적용 건설공사의 경우
2. 구조해석 및 검토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3. 그 밖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③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개정 2009. 1.30)

1.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거나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일선기관장이 공정한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0. 5. 7)

제6조(심사위원의 자격) ① (삭제 2009. 1.30)

②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의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 1.30)

1. 공단의 건설안전분야 3급 이상 직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건설분야 조교수 이상
3. 공공기관 발주의 대형특수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의 감독자·감리자 및 설계 담당자
4. 건축, 토목, 건설안전, 전기 또는 설비와 관련된 해당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및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8년이상 업무에 종사한 사람

제7조(심사위원의 위촉 등) ①이사장 또는 일선기관장은 심사위원을 위촉하려면 제6조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선기관장이 공단 임직원을 신규로 위촉하려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5. 7)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별도의 위촉 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일선기관장(또는 공단본부 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1. 다른 일선기관(또는 공단본부)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대형 또는 특수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의 감독자, 감리자, 설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③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임직원이 심사위원이면 공단 재직시까지로 한다.(개정 2009. 1.30)

④이사장 또는 일선기관장은 심사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1. 심사위원이 계획서 등의 심사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2. 심사위원이 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를 게을리 한 경우
3. 심사위원이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심사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심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⑤이사장 또는 일선기관장은 공단 임직원 이외의 외부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면 공단 전산프로그램 자문위원 정보관리에 등록된 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제8조(심사위원의 임무) ①심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30)

1. 심사회의 참석
2. 해당 분야의 심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서 작성
3. (삭제 2009. 1. 30)
4.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른 첨부서류 검토
5. <삭제 2004. 9.20>
6. <삭제 2004. 9.20>
7. <삭제 2004. 9.20>
8. <삭제 2004. 9.20>
9. <삭제 2004. 9.20>

②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심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30)

1.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심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계획서 제출서류 검토 총괄
가. 심사반의 구성
나. 회의일시 및 장소
다. 회의참석 대상자에 대한 회의일정 통보
2. 심사회의 주관
3. 심사회의 결과 서류보완이 필요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보완사항 기재서 작성
4. 시행규칙 제123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구분
5. 심사결과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부적정원인 및 보완사항 기재서,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결과(부적정) 통보 이유 및 개선사항 기재서의 작성
(전문개정 2004. 9.20)

제 3 장 계획서의 심사 등

제9조(계획서의 접수) ①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른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각 일선기관에서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②접수된 계획서 및 첨부서류가 일선기관의 관할 사업장이 아니면 해당 일선기관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 5. 7)

③공단본부 심사대상인 1종 공사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각 일선기관에서 접수하여 공단본부 건설안전실에 통보하여 심사를 수행한다.(신설 2010. 5. 7)

제10조(계획서의 심사 등) ①심사위원은 법·영·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30)

②책임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 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제출한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1.30)

③제2항에 따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에 따른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30)

제11조(심사결과의 구분 및 통지) ①계획서를 심사한 이사장 또는 일선기관장은 심사를 실시한 후 시행규칙 제123조제1항 및 별표 2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구분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0. 5. 7)

②이사장 또는 일선기관장은 계획서 심사결과 적정판정이나 조건부적정 판정에 해당하여 시행규칙 제123조제2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내어 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1. 계획서 1부

2 조건부적정 판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부 적정원인 및 보완사항 기재서 1부

③이사장 또는 일선기관장은 계획서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에 해당하여 시행규칙 제123조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부적정) 통보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결과(부적정) 통보 이유 및 개선사항 기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주에게도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결과(부적정) 통보 이유 및 개선사항 기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0. 5. 7)

제 4 장 확 인 등

제12조(확인 실시기관 등) ①이사장 또는 확인대상 사업장을 관할하는 일선기관장은 법 제48조 제5항,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②확인대상 사업장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대상으로 정기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토록 심사시 사전협의하고, 이사장 또는 일선기관장은 제출된 계획을 확인검사 계획에 반영하여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③이사장 또는 일선기관장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공동조사 대상 사업장 확인시 매월 확인계획을 관할지역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공동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제13조(자율안전관리업체의 확인)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관리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장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실 착공되는 사업장은 확인검사를 준공 시 까지 면제한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5. 7)

제14조 (삭제 2001.12.24)

제15조(확인절차) ①이사장 또는 일선기관장은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른 확인을 실시할 경우 확인 대상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해당분야 직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고 필요시 공단에 위촉된 외부 심사위원 또는 자문위원을 확인반에 포함할 수 있으며, 착공당시의 총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으로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으로부터 15에서 8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2명 이상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공정율이 15% 미만이거나 85% 초과시 1명이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5. 7)

②제1항에 따른 확인반원은 사업장 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관련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표 및 개선사항기재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요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요청이유 및 개선방법 기재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③확인반원은 시행규칙 제124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확인결과 미이행 사항이 있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사업장 참여자에게 그 사항을 설명하여 개선토록 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7서식에 의한 확인결과통지서에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가 되도록 개선결과 확인일을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알리고 그 개선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확인반원은 10일 이내에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장 참여자와 협의하여 개선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제16조(확인결과의 구분) 확인반원은 사업장 확인을 실시한 후 별표 3의 확인결과의 구분 기준에 따라 확인결과를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제17조(확인결과의 처리) 이사장 또는 일선기관장은 제16조에 따른 사업장 확인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1. 적정 : 확인반원이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결과표 및 개선사항기재서 각 2부를 작성하여 확인실시 사업장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1부를 보낸 후 종결 처리한다.(개정 2010. 5. 7)
2. 조건부 적정 : 확인반원이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결과표 및 개선사항 기재서 각 2부를 작성하여 확인실시 사업장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1부를 보내어 조건부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른 확인일에 확인을 실시하여 개선이 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한다.(개정 2010. 5. 7)
3. 조치요청 : 제2호에 따른 조건부사항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개선결과 확인일까지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와 확인실시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결과표 및 개선사항 기재서를 작성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요청 이유 및 개선방법 기재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 처리한다

②(삭제 2001.12.24)

제18조(심사 및 확인대상 사업장의 관리 등) ①이사장 또는 일선기관장은 심사 및 확인 실시 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공단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②이사장 또는 일선기관장은 확인실시 대상사업장이 부도 또는 폐쇄, 확인대상 공사의 중지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첨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후 출장복명서를 첨부하여 종결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③<삭제 2010. 5. 7>

제 5 장 보 칩

제19조(실적 전산입력 및 보고) ①이사장 또는 일선기관장은 계획서의 접수·심사 및 확인 후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공단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②시행규칙 제124조의2에 따라 계획서를 지연제출하거나 미제출한 사업장을 발견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지연)제출 사업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30)

제20조(수수료의 수납) ①일선기관장은「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노동부고시)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사업장에서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수수를 면제한다.(개정 2010. 5. 7)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영수증과 함께 회계 담당부서의 장에게 공단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③제1항에 따른 심사수수료에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알리고 회계담당부서의 장에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제21조 (삭제)

제22조(심사·확인 서류의 폐기) 심사·확인 관계 서류의 폐기기준일은 대상 공사 종료 후 2년으로 한다. 단, 공사중지 사업장의 경우 공사중지 확인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0. 5. 7)

제23조(수당 및 여비) 공단에 위촉된 외부 심사위원 또는 자문위원이 심사 및 확인에 참여하여 자문 또는 기술을 제공하였을 경우 공단내규 자문위원 운영규칙 제7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 5. 7)

부 칩(1995.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96.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심사 및 확인업무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칩(1998. 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 1.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 12.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 5.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23)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7. 12.31까지는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8. 3. 3)

이 규칙은 등록한 날(2008년 3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30)

이 규칙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7)

이 규칙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9조제3항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10. 5. 7)

심사 실시기관별 대상공사 구분

(제4조 관련)

구분	대상공사	심사 실시기관
1종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해체- 최대 지간길이가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지하철공사, 해·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인 터널 건설공사- 깊이 30m 이상인 굴착공사	본부
2종 공사 (1종 공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 높이가 31m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건설·개조·해체(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종교, 의료, 숙박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또는 냉동·냉장창고는 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터널 건설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 용수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일선기관

(별표 2) (개정 2010. 5.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판정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결과구분	판 정 기 준
가. 적 정	(1)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첨부서류 및 내용의 누락이 없고 계획된 내용이 모두 적정한 경우
나. 조건부 적정	(1)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나 일부 계획보완 또는 공사 진행중에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 부적정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1개 이상 또는 제3호 중 작업공종 2개 이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획서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계획서 내용이 다른 사업장의 계획서를 복사하는 등의 이유로 설계도면 및 실제 적용공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작업공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은 수립되었으나 구체적인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5) 심사결과 조건부 사항이 10건 이상인 경우 (6) 그 밖에 계획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적용이 곤란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의 구분 기준

(제16조 관련)

결과구분	기준
가. 적정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의 내용이 부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조건부 적정	(1)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의 내용이 일부 부합하지 않으나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단기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의 내용이 일부 부합하지 않으나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어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세부 안전대책이 계획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단기간에 계획수립 및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조치요청	(1)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 중지 또는 주요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가) 흠막이지보공 또는 거푸집동바리 등 붕괴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불량한 경우 (나)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방호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다) 그 밖에 계획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안전 관리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작업공종별 유해·위험요인별로 제시된 안전대책 중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방지계획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획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이 5건 이상인 경우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중 주요구조의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계획서를 보완하여 비치하지 않은 경우 (4) 조건부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권고기간 내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위원
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사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장명)

(별지 제2호서식)

심사결과서

20

심사위원 (인)

심사번호	제 호	
회사 및 현장명		
종합의견:		
심사항목	심사결과	심사기준 (관계법규등)

보완 사항 기재서

(책임)심사위원

(인)

회사 및 현장명	심사일시	심사결과
번호	보완내용	비고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 5. 7)

조건부 적정원인 및 보완사항 기재서

20
(책임)심사위원 (인)

심사번호	제 호	
회사 및 현장명		
종합 의견 :		
심사항목	조건부 적정원인 및 보완사항	심사기준 (관계법규등)

※ 조건부 내용 중 안전수칙 준수 또는 공사진행 중 주의사항을 기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의 “심사기준”에 준수사항으로 기재하여 실제 조건부 내용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함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0. 5. 7)

심사결과(부적정)통보 이유 및 개선사항 기재서

20

(책임)심사위원 (인)

심 사 번 호	제 호	
회사 및 현장명		
종 합 의 견 :		
심사항목	부적정 이유 및 개선사항	심사기준 (관계법규)

(별지 제6호 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결과표 및 개선사항 기재서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발 주 처			
공 사 금 액	백만원	공 정 율	%
공 사 기 간	. . ~ . .	근로자수	명
공 사 규 모			
재해발생현황	해당연도/누계	() / () * () : 사망자수	
확인시 작업공중			

※ 확인결과 등 공단 직원의 업무처리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I.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1. 관리적사항

가. 현황 및 점검사항

안전 조직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성명		선임일자	
	안전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안전 교육	직무교육	<input type="checkbox"/> 관리책임자교육(<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보수)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관리자교육(<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보수)			
	정기교육	<input type="checkbox"/> 근로자교육 <input type="checkbox"/> 관리감독자교육			
	수시교육	<input type="checkbox"/> 채용시교육 <input type="checkbox"/> 작업내용변경시교육 <input type="checkbox"/> 특별교육			
안전 관리비	법정 안전관리비	원	계상 실행	원	
	사용금액 (. . . 현재)	원 (사용율: %)	사용항목 적정여부		
기타	협업체	실시여부 <input type="checkbox"/>	실시상태 <상> <중> <하>		
	노·사협의체	실시여부 <input type="checkbox"/>	실시상태 <상> <중> <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안전점검	<input type="checkbox"/> 순회점검 <input type="checkbox"/> 합동안전보건점검			
	개인보호구 건강진단				
	안전인증	크레인	실시 : 대 미실시 : 대	리프트	실시 : 대 미실시 : 대
	안전검사	크레인	실시 : 대 미실시 : 대	리프트	실시 : 대 미실시 : 대

※ 미흡, 불량인 경우 표시하고 “나. 지적사항”에 상세내용 기술.

나. 지적사항

지 적 사 항	개 선 사 항

※ 조건부적정 판정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2. 기술적 사항

세 부 작 업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및 개선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심사결과 조건부 적정원인 및 보완사항기재서의 조건부내용 이행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 료 사 항 : ○ 향 후 조 치 사 항 : ○ 미 조 치 사 항 : 		

※ 조건부적정 판정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II.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세 부 작 업	변 경 내 용	개 선 사 항

※ 조건부적정 판정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Ⅲ.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세 부 작 업	추가 유해 · 위험요인	안전대책 및 개선사항

※ 조건부적정 판정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Ⅳ.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기술지원

향후 세부작업	유해·위험요인	기술 지원 내용

※ 차기 확인일까지 주요공정 및 작업의 위험요인 중 계획서에 누락된 사항과 중대위험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별지 제7호서식)

확인결과 조치요청 이유 및 개선방법 기재서

확 인 항 목	조치요청 이유 및 개선방법	관계법규 등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10. 5. 7)

(별지 제9호서식)(삭제 2010. 5. 7)

(별지 제11호 서식)(삭제 2010. 5. 7)